부동산공법

이 유종 교수

건축법

용어

주요구조부

→ 내력벽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, 주계단

고층건축물

→ 층수가 30층↑또는 높이120m↑

초고층건축물

→ 층수 50층↑또는 높이 200m↑

리모델링

노후억제, 기능향상 등을 위해 **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일부 개축 하 는 행위**

♣ 지하층-1/2이상

______ 다중이용건축물

♣ 설계도서- 공 사용도면, 구조계 산서, 시방서 등,

준다중이용건축물

1. 바닥면적 합계가 5.000㎡이상인

다음의 건축물

2. 16층 이상인 건축물

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**1천** m^2 **이** 상인건축물

문화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 은 제외)

종교시설, 판매시설 운수시설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

교, 노, 운, 위,관광, 장

특수구조건축물

보,차양-3m이상 돌출 / 기둥과 기둥 사이 20m 이상 특수한 설계, 시공공법필요

적용대상물



건축물, 대지, 일부 공작물, 건축설비

건축물

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리는 시설물(대문, 담장), 지하, 고가의 공작 물 – (사무소, 점포, 차고, 창고, 공연장 등)

건축법 배제 건축물

대지

원칙: 1필지 → 1대지 예외) ①2이상의 필지 → 1대지 ②1필지일부→1대지

- ①지정,임시지정문화재
- ②철도관련시설
 - → 운전보안시설 → 보행시설
 - ◎플랫폼 ②급수,급탄시설
-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
- ④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(공장안 이동 용이한 것)
- ⑤ 하천구역내 수문조작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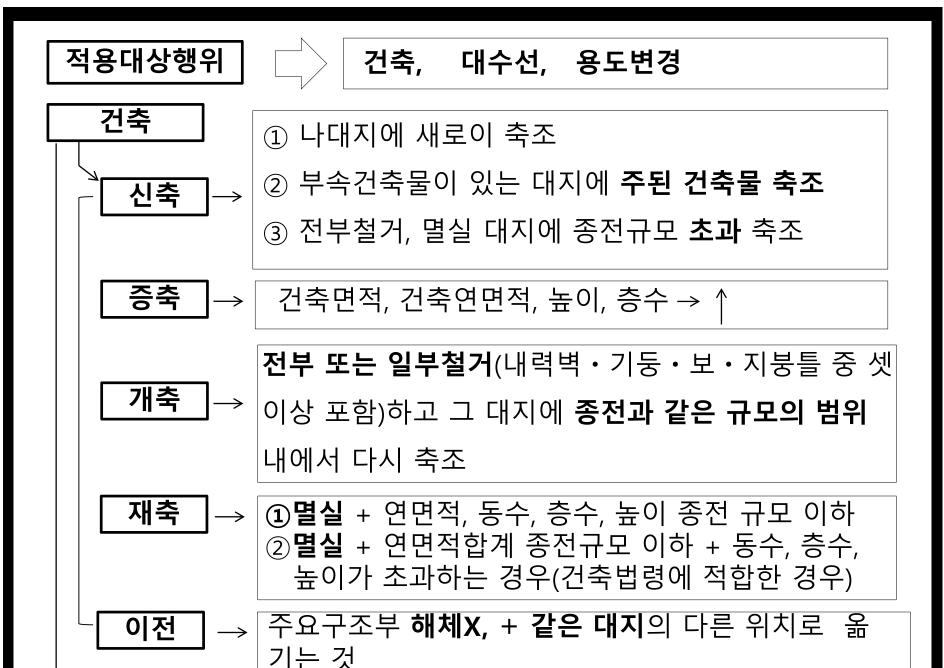
신고대상 공작물



- · 2옹담, 4기장첨광 ,6굴철, 8고, 5태양 → 초과시
 - ·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... 외벽 x

╱4광탑

• 바닥면적 30m²를 넘는 지하 대피호



대수선



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·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내력벽	증설 또는 해체	30㎡이상 수선 또는 변경
외벽 마감재료	증설 또는 해체	30㎡이상 수선 또는 변경
기둥, 보, 지붕틀	증설 또는 해체	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
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	증설 또는 해체	수선 또는 변경
주계단 · 피난계단 · 특별 피난계단	증설 또는 해체	수선 또는 변경
다가구주택,다세대주택 의 가구간,세대간의 경계 벽	증설 또는 해체	수선 또는 변경

용도변경



권한자: 구청장 (특, 광 → ※)

9개의 시설군 ← 29개의 용도군

허가

자: 자동차관련시설

산 : 공, 창, 운, 위, 자, 묘, 장

전: 방송, 발전

문: 문 종 위 관

영: 판 운 숙 다

교: 노 교 수 의 야

근: 1종, 2종근생

주: 단독,공동, 업무, 교정

신고 기(**그**) : 동물 및 식물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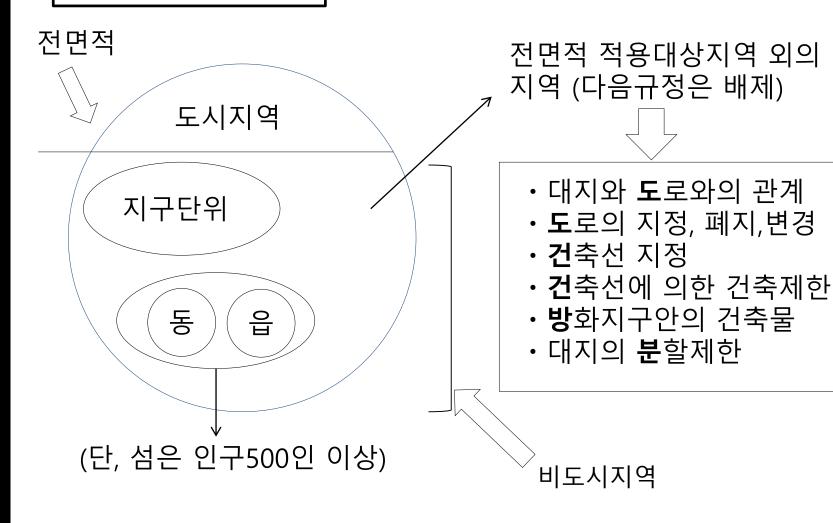
- ◆ 규정준용
- ① 허가·신고대상인 경우로서 100m² 이상인 경우
 - → 사용승인준용
- ②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바닥 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경 우 → 건축사의 설계

- •동일 용도군간,
- 1종 <-> 2종 근.생은 제외)

건축물대장기재변경신청

신청 🗶

적용대상지역



건축법- 총절

- 01.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?(단,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,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) ▶제29회
- ① 관광휴게시설
- 판매시설
- ③ 운수시실 중 여객용 시설
- ④ 종교시설
-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
5천m'이상인 경우: 다중이용건축물

준다중이용건축물

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**1천** m^2 **이 상인건축물** 문, 종, 판, 여, 종, 관 + 교, 노, 운, 위,관광, 장

02.건축법령상 '주요구조부'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▶제27회

ㄱ. 지붕틀 ㄴ. 주계단 ㄷ. 사이 기둥 ㄹ. 최하층 바닥

① ∟ ② ¬, ⊏ ❤️ ⊏, ᡓ ④ ¬, ∟, ᡓ ⑤ ¬, ∟, ⊏, ᡓ

03.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? ▶제28회

- ♥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
- ②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
-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
-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
-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

건축법 배제 건축물



- ①지정,임시지정문화재
- ②철도관련시설
 - ○운전보안시설 ○보행시설
 - ◎플랫폼 ②급수,급탄시설
-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
- ④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(공장안 이동 용이한 것)
- ⑤ 하천구역내 수문조작실

04.건축법령상 '건축'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▶제25회

-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
-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
- ©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(연면 적합계, 동수,층수, 높이)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
-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5m 옮기는 것

05.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제31회)

- ♥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"건축"에 해당한다.
- ② "고층건축물"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 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"재축"에 해당한다.
-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"이전"에 해당한다.
-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 적을 늘리는 것은 "대수선"에 해당한다.

06.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 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? ▶제25회

용도변경 전

- 판매시설
- 숙박시설
- ◎ 장례식장
- ◎ 의료시설
- ◎ 제1종 근린생활시설

용도변경 후

창고시설

위락시설

종교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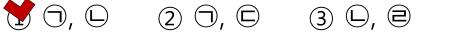
교육연구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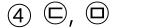
업무시설













- 07.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m²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.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제31회)
-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한다.
- ♥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m²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.
- ④ A도지사는 도시. 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 도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
사전결정 대상 건축허가대상(건축신고대상 ✗) 동시신청 건축위원회심의 +교통영향평가서 검토 효과 인・허가의제(개발, 산지, 농지, 하천) 건축허가신청 2년이내(미신청시 효력상실) 건축허가 원칙 원칙 사·군·구청장, 특·자, 특도

- **예외** → 특별시장, 광역시장 → ① 21층↑,10만↑
 - ② 30% 이상 증축 → 위①로 변경
 - ③단, 공장, 창고, 심의는 제외)

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←시장,군수 인 경우

- ① 21층 이상, 10만m² 이상 (단, 공장,창고,심의는 제외)
- ② 자, 수 + 3층 또는 연,합 1000m² 이상 + 위, 숙 ,공, 일, 일
- ③ 주, 교 + (X) + 위, 숙

대지의 소유권확보 ↔ 예외: 다음과 같다. 건축허가 ① 대지 사용권원확보 --> 다만,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은 요건 제외 ② 공유자 80% + 공유지분80%이상 동의한 경우 → 반대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③ 확인 또는 증명된 경우 ___ ①허가 후 2년 이내 미 착수 시(단,공장은 3년) ②공사완료 불가능시 ③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상실 → 6개월 경과 사유에 해당: **취소하여야 한다**. 단, ①의 경 우에 정당한 사유→1년 연장가능 →① 위락시설·숙박시설: 주거,교육환경목적 ② 방재지구,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:침수우려 → 사유에 해당 :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

를 거부할 수 있다.

건축허가 • 국장,(국토관리, 장관의 요청시) → 허가권자 특·광·도지사(지역계획상 등) → 시장,군수, 구청장 제한 • 2년 이내 / 1회-1년이내 연장가능 • 제한 후 보고(특·광·도지사는 국장에게) •절차 : 주민의견청취, 건축위원회 심의 효과 인·허가의제(개발행위 등) → 소방법 🗶 국가 • 지자체가 공용목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: 건축협의 → 착수 → 사용(허가,신고, 사용승인 적용※)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- 10일내 개최 / 3일전까지 관계 협의회개최 부서에 통보 / 관계부서는5일 이내 의견 제시 연면적이 1천 m²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 예치금예치 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1% 이내 예치

|안전영향평<u>가</u>│─〉①초고층건축물 ② 16층이상 + 연면적10만m² 이상

건축신고

| □ 신고수리 : 5일내 → 1년 내 착수 의무 → ★ → 신고효력 상실

3 → 3m 이하의 증축

표 → 표준설계도서

연탄 →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

암기 : **3 표 연탄 공장은 대** 농이 인수 했는 **바 관**

공장 → 공업지역, 산업단지 등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m²이하 (♣ 공장은 뻥 2, 5)

대수선 -> ① 연면적 200m² 미만, 3층 미만 (2미3미)

② 해체 X - 경미한 수선 (30, 세, 방, 주)- (증설은 아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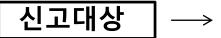
농수산업 → 창고 : 200m²이하, 축사, 재배사 : 400m² 이하 (♣**창2축4)**

바닥면적 \rightarrow 바닥면적85 m^2 이내의 증축,개축,재축

비도시지역→ **관**리, 농림,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, 3층미만 (2미3미)

가설건축물 허가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 기준 ① 국토법에 적합(개발행위허가에 위배되지 않을 것) ② 4층 이상이 아닐 것 (3층 이하 일 것) ③ 철근,철골콘크리트 → ※ ④ 존치기간 : 3년 이내 ⑤ 전기, 수도 등 → 간선공급설비설치 필요 ※

⑥ 분양목적이 아닐 것



①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 10m²이하

② 주,상, 공업지역 내 농업용비닐하우스 100m²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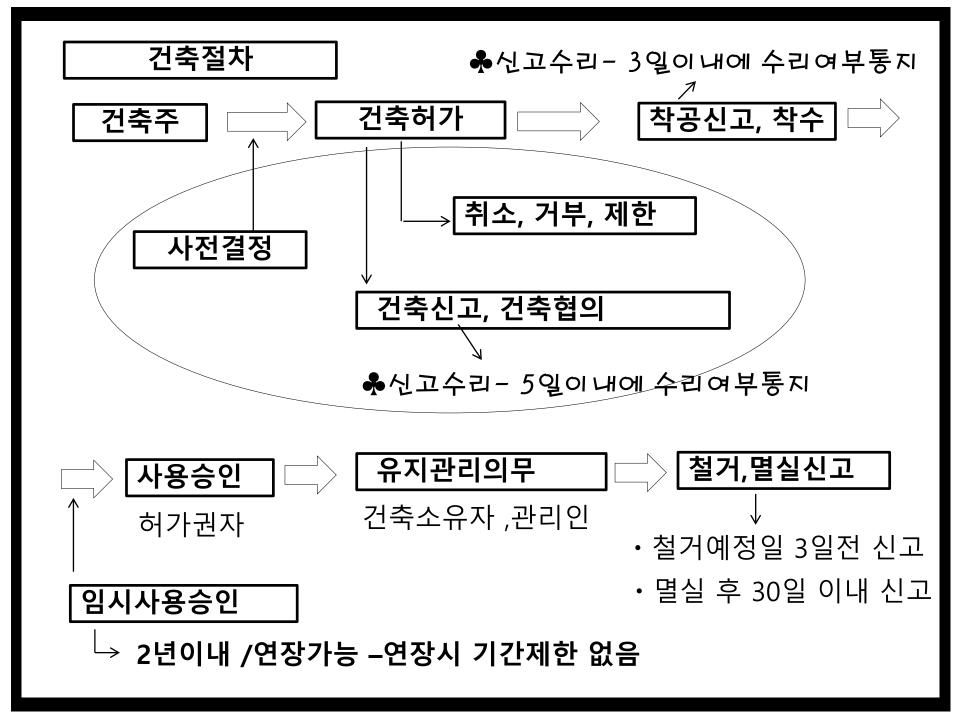
- ③ 야외흡연실용도 50m²이하
- ④ 전시용 견본주택 등



존치: 3년이내

연장 \longrightarrow

- 1. 시,군,구청장 ---> 존치기간 만료 30일전 통지
- 2. 허가대상 : 만료 14일전 까지 연장허가 신청
- 3. 신고대상 : 만료 **7일전까지** 연장 신고



건축법 - 건축물의 건축

08.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▶ 제20회

- ① A도 B시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 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대상사업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.
- ★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.
- ④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, 규모,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.

09.건축법령상 시장·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? ▶제21회

-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
-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,000m²인 창고
-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·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㎡인 2층의 위락시설
- ★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·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.
-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·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㎡인 2층의 숙박시설

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← 시장,군수 인 경우



- ① 21층 이상, 10만m² 이상 (단, 공장,창고,심의는 제외)
- ② 자, 수 + 3층 또는 연,합 1000m² 이상 + 위, 숙 ,공, 일, 일
- ③ 주, 교 + (

X

) + 위, 숙

10.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▶17회

-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 기간을 연 장 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.
- ★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1.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▶제29회

- ♥ 연면적 150㎡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
- ② 연면적 180m²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
- ③ 연면적 270m²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
- ④ 1층의 바닥면적 50m², 2층의 바닥면적 30m²인 2층 건축물의 신축
- ⑤ 바닥면적 100㎡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

건축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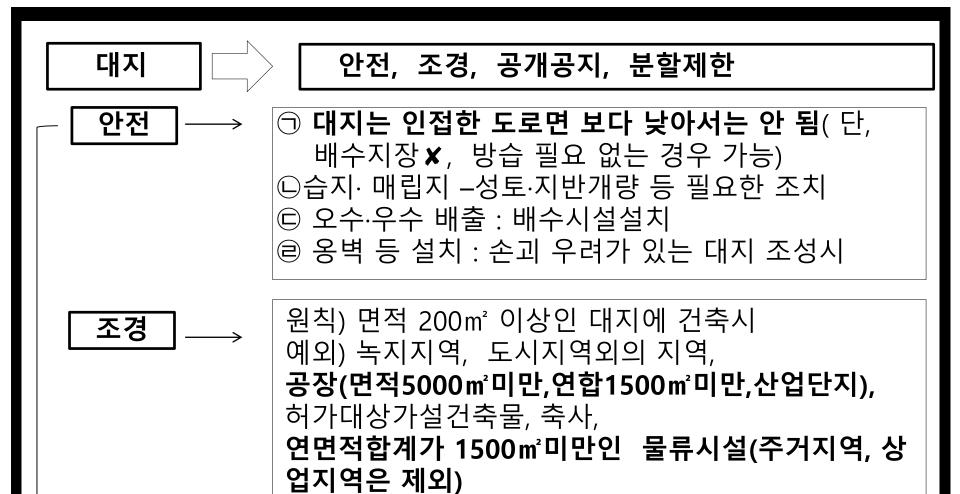


대수선

- ① 연면적 200m² 미만, 3층 미만 (2미3미)
- ② 해체 X 경미한 수선 (30, 세, 방, 주)- (증설은 아님)

12.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 ▶제25회

- ① 바닥면적이 각 80㎡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 을 신청할 수 있다.
- ★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㎡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m²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건축신 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


분할제한 (건부지) 용도지역별 분할제한

60m²(주), 150m²(상·공)

기타규제에 따른 제한

200m²(녹) 60m²(기타)

- 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② 건폐율, 용적률위반
- ③ 대지안의 공지 ④ 높이제한 ⑤ 일조권

공개공지

- 1 .**대상지역**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 , 준공업지역,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
- 2. 대상건축물- 바닥면적합계가 5000㎡ 이상인 종교시설, 판매시설(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)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운수시설(여객용), 문화 및 집회시설, 그 밖에 조례가 인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
- 3. **확보면적- 대지면적의 10%이하**, /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면적을 공개공지면적으로 가능
- 4. 구조- 긴의자등 휴게시설설치, 피로티 구조로도 가능
- 5. **완화 용적률 1.2배이하**, 높이제한1.2배이하
- 6. 활용-연간 60일 범위내에서 문화행사 등

도로

개념

①원칙: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로서 법상도로 이거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

- ② 예외
 - □지형조건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: 너비 3m이상인 도로
 - ◎ 막다른 도로──
 - ⓐ10m 미만인 경우 : **2m** 이상
 - ⓑ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: **3m** 이상
 - ⓒ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: 6m(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에서는 4m) 이상

도로 지정, 폐지, 변경



도로지정: 이해관계인의 동의(원칙)

도로의 폐지, 변경 : **반드시 동의 필요**

대지와 도로와의 관계(접도의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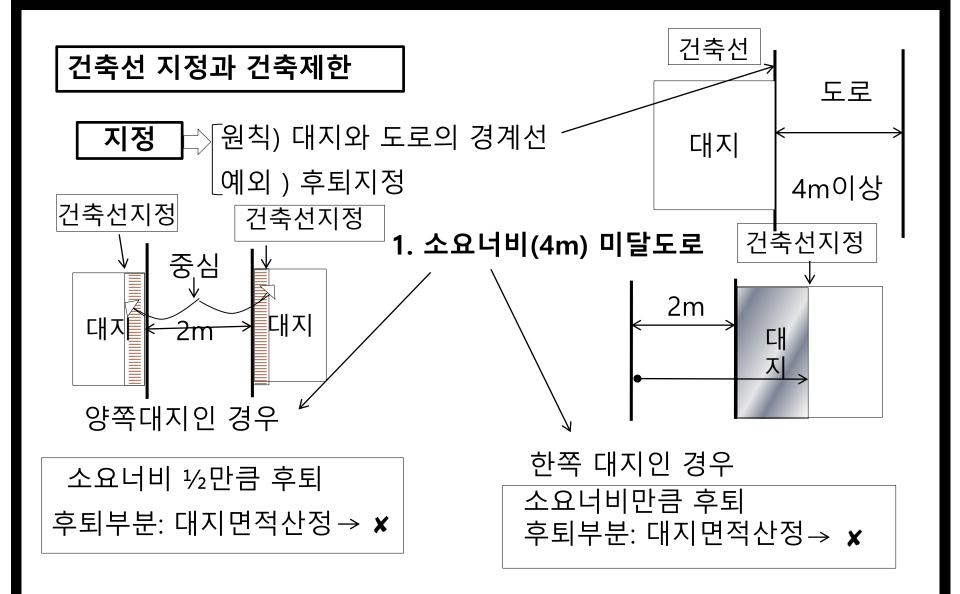
접도 → 대지는 도로에 **2m 이상**(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) 접할 것

예외 →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.

- 1.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건축물 주위에 광장, 공원 등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 정한 경우
- 3.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

연면적합계가 2,000m²(공장은 3,000m²)이상인 건축물(축사, 작물재배사 제외)의 대지는 **너비 6미터 이상 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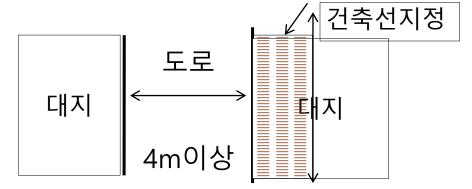
강화



2. 별도지정건축선: 시장 등이 건축물의 환경정비 등 도시지역 4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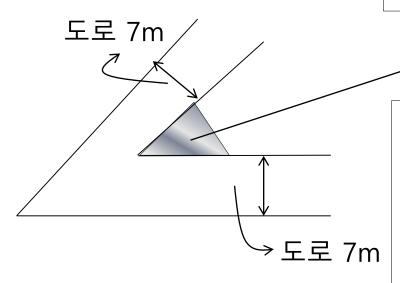
이하에서 따로 지정가능

후퇴부분:대지면적산정 에 포함한다.



3. **도로 모퉁이(가각전제)** :

가각전제 요건 : 양 너비 8m 미만이고 교차각 120° 미만



후퇴부분: 대지면적산정 → ※

- ♣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
-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됨 (단, 지표 아래 부분은 가능)
- ②도로면으로부터 **높이 4.5m 이하**에 있는 출입구, 창문 등 구조물은 건축선의 수직 면을 넘어서는 안됨